

영어 미숙련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국적차별 금지 제 VI 편과 관련된 미연방정부 재정지원 수혜자 지침

배경 설명

미행정명령 13166, “*영어 미숙련자들을 위한 서비스 이용 개선*”에서 요구한대로 (2000년 8월 11일), 미국토안보국은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영어 미숙련 신청자들과 수혜자들이 해당 단체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침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토안보국 지침은 2002년 미법무부가 공고한 지침과 유사합니다. 본 지침은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규제 요건들에 관한 기관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영어 미숙련자들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 VI 편에서 국적 차별 금지 조항과 안보국이 도입하고 있는 규정의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토안보국 영어 미숙련자 지침 요약

I. 서론

미국에 거주하는 영어 미숙련자들의 배경과 함께, 이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II. 법적 권한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 VI 편 *라우 v. 니콜스* 대법원 판결, 그리고 행정명령 13166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III. 누가 해당되는가?

미국토안보국의 재정 지원 수혜자들의 예:

- a.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방국;
- b. 주정부 및 지방정부 경찰국;
- c. 주정부 및 지방정부 비상관리 기관들;
- d. 주정부 및 지방정부, 유자격 비영리 개인단체들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재난 또는 비상 선포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때;
- e. 비상식량 및 대피 프로그램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들;
- f. 대중교통 운영당국
- g. 개인, 지역사회, 가족 및 직장들의 비상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제반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비상 대책 팀들(CERT);
- h. 이민 및 세관 단속국이 체포한 위반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이나 수감 시설;
- i. 해양경비대가 지원하는 선박 안전 프로그램;
- j. 연방법 집행 훈련 센터(FLETC)를 통해서 특수 교육을 받는 기관들;
- k.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 운행 프로그램;
- l. 주정부 차량국.

IV. 영어 미숙련자들이란 누구인가?

영어 미숙련자의 정의와 그 예를 제공합니다.

V. 수혜 기관은 영어 미숙련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떠한 언어 서비스가 요구되는지 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 분석 방법을 논의합니다:

- 1) 예상되는 프로그램 대상 영어 미숙련자들의 숫자 또는 전체 퍼센티지;
- 2) 비영어권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 3)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의 성격과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도; 그리고
- 4) 수혜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및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VI. 언어 지원 서비스 선택하기

수혜 단체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 구두 또는 문서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통역사의 자질 등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VII. 영어 미숙련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 지원 플랜의 요소들

네 가지 요소 분석을 마치고, 또한 어떤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적절한지 결정한 후, 수혜 단체는 영어 미숙련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수혜 기관의 영어 미숙련자 서비스 플랜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VIII. 자발적 준수

자발적 준수를 달성한다는 목표와 집행 방법을 설명합니다.

IX. 특정 수혜 단체들에게 적용

DHS 로부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수혜 단체들은, 영어 미숙련자들이 프로그램과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단계적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비상 대책 준비, 보건 및 안전, 이민관련 구금, 법집행 등에서 언어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그 잠재적 위협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토안보국은 영어 미숙련자들이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 단체들이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연락처

우편 또는 전화:

Office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uilding 410, Mail Stop #0190
Washington, D.C. 20528

전화: 202-401-1474

톨프리: 1-866-644-8360

TTY: 202-401-0470

톨프리 TTY: 1-866-644-8361

팩스: 202-401-4708

이메일:
crcl@dhs.gov